

2023년 부산영상위원회 부산제작사 장편다큐멘터리 단계별지원 사업 공고

I

사업목적 및 지원개요

1. 사업목적

부산지역 다큐멘터리 분야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지역 영상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2. 지원내용

부산제작사 장편다큐멘터리 단계별(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

3. 지원규모

구분	기획개발단계	제작단계
지원내용	기획개발비 지원	촬영 제작비 지원
지원편수	3편 내외	2편 내외
지원금	최대 1천만원	최대 6천만원
신인쿼터 적용	최소 2편	최소 1편

※심사를 통해 지원금 및 편수 결정

II

지원 대상 및 지원 조건

1. 지원대상 및 신청 자격

■ 기획개발단계

구분	▶ 개인으로 신청 가능 ▶ 신인 및 일반 신청 가능 ※신인 기준: 장편영화(60분 이상) 연출 경험이 3편 미만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부산에 거주하거나 또는 최근 5년 이내 부산에서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활동 경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제작사가 있을 경우, 제작사는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어야 함

※부산 활동 경력은 부산에서의 영화영상 콘텐츠 기획, 연출, 제작에 관련한 활동 경력만 인정함

■ 제작단계

구 분	▶ 제작사로만 신청 가능 【감독】 신인 및 일반 신청 가능 ※신인 기준: 장편영화(60분 이상) 연출 경력이 3편 미만	
신청자격	제작사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는 제작사로, 제작사 혹은 제작사 대표가 최근 5년 이내 부산에서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활동경력을 증빙 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본사) 내 종목에 영상물 관련 종목이 있어야 함 - 극장 상영, 방영, OTT 등의 배급을 목표로 기획된 작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단, 방송 편성이 확정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1인 기업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주요 스태프 구성이 확정된 경우
	감독	공고일 기준으로 부산에 거주하거나 또는 최근 5년 이내 부산에서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활동 경력을 증빙하여야 함

※부산 활동 경력은 부산에서의 영화영상 콘텐츠 기획, 연출, 제작에 관련한 활동 경력만 인정함


주요 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저작권은 신청 제작사 또는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선정 이후 제작사 또는 작품에 참여하는 감독 변경 불가 ▶ 해당사업의 지원을 받은 감독은 동일 단계에 2년 연속 지원 불가 ▶ 당해 연도 제작 단계, 기획개발 단계 동시 지원 불가 ▶ 신청 제작사는 본 위원회의 제작지원 사업 각 부문(장편극영화/(웹)드라마/장편다큐멘터리 제작지원)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지원작 선정은 1편으로 제한함
----------------	---

2. 지원조건

■ 공통사항

- 제작 및 기획개발 단계의 지원금 정산과 결과 보고는 **12월 8일(금)까지** 완료해야 함
- 지원금은 약정 체결 이후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검토한 후에 지급
※지원금은 일시불로 지급되나 중간 정산 및 중간 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정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작품 제작 완료 시 위원회의 사업 홍보 목적(비영리 공공 목적)으로 작품의 영상 클립 및 스틸 컷 등을 사용함에 동의해야 함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등으로 활용
- 제작 완료(상영본, 영화제 출품용, 기획개발 트레일러 완성본) 시, 해당 사업 지원에 대한 크레딧을 표기해야 하며,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크레딧 명시 양식

부산영상위원회 2023년 부산제작사 장편다큐멘터리 단계별 지원작	 BUSAN FILM COMMISSION 부산영상위원회
--	---

■ 세부사항

기획개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개발 단계 선정작에 대해서는 부산영상위원회가 마련한 합평회 실시를 통한 작품 방향 설정 및 연내 3~5분 내외 트레일러 완성본 제출해야 함 ※합평회: 부산영상위원회에서 다큐멘터리 창작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기획개발 단계 선정작에 대해 품평 및 방향성 등의 의견을 전달하여 다큐멘터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 ▶ 기획개발 계획서, 합평회 보고서, 최종 결과 보고서 등 위원회가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제출서류</td> <td>-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필수제출) -기획개발 계획서</td> </tr> <tr> <td>지급방식</td> <td>-일시불 지급(*중간 정산 및 중간 보고서 필수제출)</td> </tr> </table>	제출서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필수제출) -기획개발 계획서	지급방식	-일시불 지급(*중간 정산 및 중간 보고서 필수제출)
제출서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필수제출) -기획개발 계획서				
지급방식	-일시불 지급(*중간 정산 및 중간 보고서 필수제출)				
제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결정금액의 10% 이상의 현물을 포함한 추가 자금 조달을 완료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 자금조달 인정 항목은 장비 대여, 스튜디오, 후반 업체, 로케이션, 임차료 등으로 한정하며 인건비는 제외함 ※상기 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및 필요시 지원 철회 ▶ 부산 인력(스태프, 배우, 보조출연자 등) 고용은 기본 조건으로 이행되어야 함 ▶ 사업 기간(당해 12월 8일까지) 내 지원금 정산서 및 촬영증빙자료(현장 편집본 등) 제출을 완료해야 함 ▶ 직접 제작비 외에 기자재 구입, 경상비(통신비, 임대료 및 식대 등의 사무실 운영비), 수리 비용 등은 집행 불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제출서류</td> <td>-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필수제출) -제작계획서, 투자확약서 등의 자체자금 조달 증빙 제출</td> </tr> <tr> <td>지급방식</td> <td>-일시불 지급(*중간 정산 및 중간 보고서 필수제출)</td> </tr> </table>	제출서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필수제출) -제작계획서, 투자확약서 등의 자체자금 조달 증빙 제출	지급방식	-일시불 지급(*중간 정산 및 중간 보고서 필수제출)
제출서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필수제출) -제작계획서, 투자확약서 등의 자체자금 조달 증빙 제출				
지급방식	-일시불 지급(*중간 정산 및 중간 보고서 필수제출)				

Ⅲ

심사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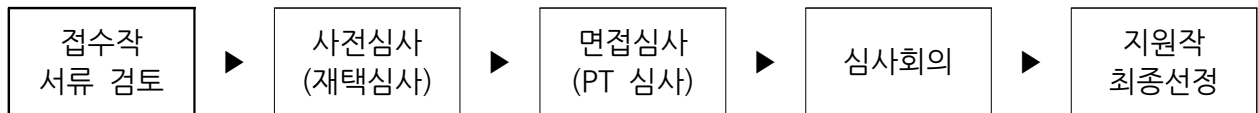
1. 지원결정

- 2023년 부산제작사 장편다큐멘터리 단계별지원 심사규칙에 의거함
- 신청 접수된 작품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결정과 위원회 최종 의결에 따라 결정
※선정과정에서 지원 적격 작품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재공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음

2. 심사위원회 구성

- 부산영상위원회 전문가 및 심사·평가위원 풀을 활용
- 각 분야(연출/제작/투자배급/평론/기타 등)심사위원 후보 중에 추천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선순위 후보 순으로 섭외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3. 심사절차



4. 선정기준

○ 기획개발단계

평가 항목	배 점
개발예정작품의 기획력 및 독창성	40점
제작 가능성 (기획개발 계획서, 기획개발 제작전략 등)	30점
제작 완성 및 발전 가능성	30점

○ 제작단계

평가 항목	배 점
작품기획 및 우수성(독창성)	40점
예산운용 및 제작역량 (제작계획서, 세부 제작예산서 등)	30점
제작 완성 및 발전 가능성	30점

5. 선정작 발표

위원회 대표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IV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사업공고	2월 6일(월)	홈페이지 게시
신청접수	3월20일(월)~3월31일(금) 17시까지	제출시간 엄수
심사 및 선정	4월중	※PT심사: 4월 예정
약정체결 및 사업진행	4월~12월	
정산 및 결과보고	12/8일(금)까지	

※사업 추진일정은 운영진행 및 심사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V

접수서류

기획개발단계		제작단계	
온라인 신청	지원신청서 :부산영상위원회 회원가입(영화인) 후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지원신청서 :부산영상위원회 회원가입(영화인) 후 온라인 신청
1	저작권 보유 확인 및 서약서(소정양식)	1	저작권 보유 확인 및 서약서(소정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소정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소정양식)
3	부산영상위원회 지원사업 확인사항(소정양식)	3	부산영상위원회 지원사업 확인사항(소정양식)
4	기획개발 계획서(소정양식) *[선택서류] 투자계약(의향)서: 외부 투자계약 확정된 경우에만 제출, 기타 계약서 등 첨부	4	제작계획서(소정양식) *[선택서류] 투자계약(의향)서: 외부 투자계약 확정된 경우에만 제출, 기타 계약서 등 첨부
	참여구성원 리스트 및 활동내역서 (부산활동내역 별도표기) ※신청인 거주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필수첨부		참여구성원 리스트 및 활동내역서 (부산활동내역 별도표기) ※감독 거주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필수첨부
5	작품기획서 (로그라인 및 기획의도, 등장인물 설명 및 줄거리, 기획개발 및 제작전략, 감독소개, 향후 개발계획)	5	제작기획서 (로그라인 및 기획의도, 시놉시스 및 줄거리, 등장인물 설명, 주요장면 연출계획, 촬영 세부계획, 감독 및 제작진 소개, 작품 활용계획)
6	기획개발비 예산 내역서(소정양식)	6	제작비 예산 내역서(소정양식/엑셀파일)
7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작사 있을 시에만 첨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첨부

※소정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VI

접수

1. 접수기간

3/20(월)~3/31(금) 17시까지

2. 접수방법

홈페이지(www.bfc.or.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포트폴리오 제출방법**: 온라인 신청 페이지의 ‘온라인 스크리너 링크’ 정보 입력

- 유튜브(일부 공개 설정 등) 또는 비메오(비밀번호 설정) 등
- 포트폴리오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스크리너 비밀번호 설정 및 워터마크 표시 권장
- 심사용 포트폴리오 파일의 재생은 원활해야 하며, 외국어 대사 사용 시 한글자막 제공

3. 접수문의

지원사업 담당자 051-7200-361, 336 / bfcg1@filmbusan.kr

VII

기타사항

[신청 및 선정]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신청 제작사)에게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마감시간(마감일 17시까지) 엄수
- 선정 과정에서 지원 적격 작품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은 추후 재공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음. 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의 지원자격 자진 포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해 선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차순위 작품에게 지원을 승계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명기된 스태프 및 제작/기획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 승인받아야 함

[지원 취소 및 제제]

-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 약정 체결 이후 사업 수행이 불가하여 지원금을 반납하는 지원 대상자의 경우 향후 2년 동안(약정일 기준) 부산영상위원회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약정 체결 이후 지원금이 지급된 작품일지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작품으로 판명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며, 향후 5년 동안(약정일 기준) 부산영상위원회의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정산 및 보고서 제출]

- 지원금 정산 서류는 부산영상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에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비용은 지원금에서 집행 가능함
- 약정 종료일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실적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결과 보고서, 정산 보고서, 세부 집행 내역서, 증빙자료, 회계검토 보고서, 결과 영상물 등

[기타 법적 이행]

- 임금 체불 등으로 분쟁(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작은 특히 임금체불, 근로계약을 가장한 불법 용역 계약 체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선정작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작은 부산영상위원회나 위원회가 인정하는 타 기관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확인 내역을 증빙해야 함